

# — 아동 수당에 대해서 —

## 1. 지급 대상

아동 (18세의 생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3월31일 까지의 기간에 있는 아동) 을 양육하시는 분

## 2. 지급액

아동의 연령	아동 수당액 (1인당 월액)
3세 미만	15,000엔 (셋째 아이 이후는 30,000엔)
3세 이상 고교생 연대까지	10,000엔 (셋째 아이 이후는 30,000엔)

※ 「셋째 아이 이후」란, 아동 및 아동의 형제자매 등 중, 나이가 많은 아이부터 세어서, 3번째 이후의 아이를 말합니다.

※ 「아동의 형제자매 등」이란, 18세의 생일 후, 처음 맞이하는 3월31일을 경과한 후로부터, 22세의 생일 후, 처음 맞이하는 3월31일 사이에 있고, 부모 등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 3.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짝수 달) 예, 각각 전월분까지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6월의 지급일은, 4~5월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 수당 제도에서는,  
아래 룰을 적용합니다!



- 원칙적으로, 아동이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학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부모가 이혼 협의 중 등의 이유로 별거 중인 경우는, **아동과 동거하는 분께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 부모가 **일본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분을 지정하면 그 분 (부모 지정자) 에 지급합니다.**
- 아동을 양육하는 미성년 후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미성년 후견인께 지급합니다.**
- 아동이 수양부모 등에 위탁된 경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아동의 수양부모 등이나 시설의 설치자에게 지급합니다.**

수속 방법은 ...

### 1. 먼저 하셔야 될 것

#### ● 인정 청구

아이가 태어나거나, 타 시구정촌에서 전입한 경우는, 현주소의 시구정촌에 「인정 청구서」 제출(신청)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근무처에 신청)  
시구정촌의 인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분의 수당부터 지급합니다. 신청 수속은 늦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 ※ 청구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필요에 따라서, 첨부 서류 제출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 ※ 인정 청구서는, 청구자 등의 개인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 「육아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육아 원스톱 서비스 (비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시구정촌의 창구에 가지 않아도, 마이너버 카드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생이나 전입 후 15일 이내로!

#### 15일 특례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하신 달에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출생일이나 전입한 날 (이동일) 이 월말인 경우, 신청일이 다음 달이 되어도, 이동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라면, 신청월 분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원칙적으로, 늦어진 달분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 1.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출생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주소의 시구정촌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친정 출산 등으로, 모친이 일시적으로 현주소를 떠났을 경우도, 현주소의 시구정촌에 신청을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 2. 다른 시구정촌이나 해외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날 (전출 예정일) 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처의 시구정촌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인 경우는, 근무처에서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주소의 시구정촌과 근무처에 신고 ·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이 된 경우

○ 퇴직 등으로, 공무원이 아니게 된 경우

○ 공무원이지만, 근무처의 관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신청이 늦으면, 원칙적으로, 늦은 달분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계속해서 수당을 받는 경우

현황 신고 제출은 원칙적으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현황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황 신고 제출이 필요한 분)

- 아동의 형제자매 중에 학생이 아닌 분이 있는 분 (첨부자료로서, 감호상당 · 생활비 부담에 관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 이혼협의 중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인 분
-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주민표 주소와 다른 시구정촌에서 수급하시는 분
- 지급 요건인 아동의 호적이 없는 분
- 법인인 미성년 후견인의 분
- 기타, 시구정촌에서 제출 안내가 있던 분

※ 현황 신고는, 매년 6월1일 시점의 현황을 파악하고, 6월분 이후의 아동 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요건 (아동의 감독과 보호, 생계 동일관계 등) 을 만족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현황 신고 제출이 없는 경우는 6월분 이후의  
아동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3. 예를 들어. 아래 1 ~ 6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됐다 등의 이유로, **지급 대상 아동이 없게 되었을 경우**
2.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 등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른 시구정촌 또는 해외 전출을 포함)
3.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 등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4. 같이 아동을 양육하는 **배우자를 갖게 된 경우**,  
또는 아동을 양육하던 **배우자가 없게 된 경우**
5. 수급자가 **가입하는 연금이 바뀐 경우** (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
6.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부모 지정자」**의 지정을 받는 경우

4. 18세 연도말 경과 후도, 계속해서 「셋째 아이 이후」로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계속해서 「셋째 아이 이후」로 가산을 받기 위해,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셋째 아이 이후」로 가산을 받고 있던 아이가 18세 연도말을 맞이하는 경우  
액개정 청구서와 감호 상당 · 생활비 부담에 관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진학한 아동의 형제자매 등이 22세 연도말 맞이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동의 형제자매 등이 단기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감호 상당 · 생활비 부담에 관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첨부서류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부에 대해서

아동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않고, 이를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기부하고, 지역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는 분께는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수속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신고는 원칙적으로 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자 신청은 여기서 ↓



もっと子育て応援!  
児童手当

아동 수당은, 전자 신청도 접수 가능합니다.

福岡市 児童手当 電子申請 로 검색!



### 【각 구청 문의처】

히가시구 육아지원과	092-645-1068
하카타구 육아지원과	092-419-1080
주오구 육아 지원과	092-718-1101
미나미구 육아지원과	092-559-5123
조난구 육아 지원과	092-833-4103
사와라구 육아지원과	092-833-4354
니시구 육아 지원과	092-895-7065